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354호, 2020. 1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7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함(안 제7조제1항)
- 제7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2항제2호 중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함(안 제7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2항제2호)

-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6항제1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6항제1호)

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2항제2호 중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6항제1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전자서명 등)</p> <p>① 법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u>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u>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으면 민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u>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u></p>	<p>제7조(전자서명 등)</p> <p>① ----- ----- ----- ----- 「전자서명법」 <u>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p>

<p><u>명</u>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u>공인전자서명</u>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p> <p>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u>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u>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p> <p>3.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⑥ (생 략)</p> <p>1. 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u>공인전자서명</u>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p> <p>2. (생 략)</p>	<p><u>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u>)-----.</p> <p>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 <u>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u>----- -----</p> <p>2.----- ----- -----<u>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1. -----<u>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u>----- -----</p> <p>2. (현행과 같음)</p>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416